사회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규정

□ 제정: 2020. 9. 1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사회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① "사회맞춤형 주문식 교육"이란 산업체의 인력채용 수요를 근거로 교육생의 선발,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및 채용 약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.
- ② "사회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"이란 사회맞춤형 주문식 교육을 위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개발된 교육과정을 말한다.
- 제3조(교육과정의 신설 및 개편) ① 사회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은 일반 교육과정의 개편 시기에 맞춰 신설 및 개편할 수 있다.
- ② 사회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은 학과 단위 또는 타 학과와 공동으로 신설 및 개편할 수 있다.
- ③ 사회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은 정규 과정 또는 비정규 과정으로 신설 및 개편할 수 있다.
- 제4조(산업체 선정 및 협약체결) ① 사회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학과에서는 해당학과의 인재양성유형에 적합한 건실한 산업체를 발굴해서 총장에게 추천해야한다.
- ② 사회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에서는 별도의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.
- ③ 협약에는 대학과 산업체 간의 상호 요구사항과 채용예정 약정 인원 또는 취업우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④ 사회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산업체에서는 원활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 추천
 - 2. 현장전문가 특강 지원
 - 3. 현장학습(견학) 지원
 - 4. 현장실습(4주 이상) 및 인턴쉽 과정(15주) 제공
 - 5. 현물 및 운영지원금 제공
 - 6. 기타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
- 제5조(교육과정의 운영) ① 사회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은 개설한 학과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며, 학과장이 운영 책임자가 된다. 단 복수의 학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관 학과를 선

- 6-2-5 사회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규정
 - 정하고, 그 학과의 학과장이 운영 책임자가 된다.
- ② 학과에서는 참여 학생을 해당 교육과정의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그 명단을 산학협력처로 통부하다.
- ③ 교육과정이 종료된 후 학과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계획상의 이수 기준에 따라 이수자를 선정하고, 그 명단을 산학협력처로 통보한다.
- 제6조(학사 관리) 사회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수업 및 성적 등의 학사관리 사항은 본교 학칙 및 제 규정에 따른다.
- 제7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회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제정일 이전에 시행한 것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.